

# 명예교수 임용 심사 기준에 관한 내규



**한국항공대학교**

## 개정 기록표

| 번호 | 개정일자     | 개정자 (서명) 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|
| 1  | 2009.6.1 |          | 16 |      |          |
| 2  | 2014.8.6 |          | 17 |      |          |
| 3  |          |          | 18 |      |          |
| 4  |          |          | 19 |      |          |
| 5  |          |          | 20 |      |          |
| 6  |          |          | 21 |      |          |
| 7  |          |          | 22 |      |          |
| 8  |          |          | 23 |      |          |
| 9  |          |          | 24 |      |          |
| 10 |          |          | 25 |      |          |
| 11 |          |          | 26 |      |          |
| 12 |          |          | 27 |      |          |
| 13 |          |          | 28 |      |          |
| 14 |          |          | 29 |      |          |
| 15 |          |          | 30 |      |          |

## 명예교수 임용심사기준에 관한 내규

**제1조** (목적) 이 내규는 본 대학교 ‘비전임교원 인사규정’에 따라 명예교수 임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6.1.>

**제2조** (평가항목) 명예교수 임용 심사의 세부 항목 및 배점은 각 항과 같다.<개정 2014.8.6.>

- ① 근속연수 : 30점
- ② 교육 및 연구업적 : 30점
- ③ 교외봉사 : 20점
- ④ 교내봉사 : 20점

**제3조** (평가방법)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각 항과 같이 적용하며 평가항목별 점수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배점할 수 없다. <개정 2014.8.6.>

① 근속연수 : 근속한 연수 1년에 1점 배점한다. <개정 2014.8.6.>

② 교육 및 연구업적<개정 2014.8.6.>

1. 교육업적 :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.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교육업적점수}}{1,680\text{점}} \times 15$$

2. 연구업적 :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.

[공과대학 소속 교원]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연구업적점수}}{1,200\text{점}} \times 15$$

[항공대학, 인문자연학부 소속 교원]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연구업적점수}}{800\text{점}} \times 15$$

③ 교외봉사 : 교외봉사 점수는 교원이 제출한 교외봉사 실적내용 및 업적평가시스템에 적용된 교외봉사 실적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.<개정 2014.8.6.>

④ 교내봉사 : 교내 보직별로 각 호와 같이 배점하고 동일 보직은 2회까지 인정하며, 겸직에 따른 중복기간에 한 하여는 상위보직을 인정한다. 다만, 보직 인정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.

1. A급(7점) : 대학원장, 행정처장, 교무위원

2. B급(5점) : 각 교육원장, 각 학부장, 박물관장
3. C급(3점) : 학과장, 전공주임, 연구소장 등 기타보직
4. D급(1점) : 총장 임명의 각종 위원회 위원(당연직 제외)

**제4조** (임용기준)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(100점 기준)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8.6.>

## 부 칙

1.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내규의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지침의 폐기)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‘명예교수 임용심사기준에 관한 지침’은 폐기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